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594
----------	-----

제안년월일 : 2015년 6월 26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 김태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451호)과 김제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502호)을 일괄 심사한 결과,
- 2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내용을 수정·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2. 대안의 제안사유

- 현행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는 교육시설 중 음수대 설치 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도요금 감면 대상은 초·중·고등학교로 한정하여 특수학교와 각종학교는 제외되고 있음.

또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국공립 유치원에 대해서도 일부 시범 설치하여 사용 중에 있고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음수대 설치 대상에 포함할 계획에 있으므로,

이들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수도물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음용률 향상과

더불어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하는 것임.

### 3. 대안의 주요골자

가.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정수기를 철거하고 음수대를 설치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을 포함함(안 제31조제1항제6호)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함(안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6조,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4,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공급받하고자 하는 사람은”을 “공급받으려는 자는”으로 하며,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7조 규정명 중 “산출방법”을 “계산방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설치하고자 하는”을 “설치하려는”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선납하여야”를 “납부하여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손괴”를 “파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설치하고자 하는”을 “설치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받하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사용하고자 할”을 “사용할”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소재불명일”을 “소재를 알 수 없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사용하므로서”를 “사용함으로서”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일할”을 “날 수대로”로 하며, “절사한다”를 “버린다”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일할”을 “날 수대로”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계량기에 의하여”를 “계량기로”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사람으로”를 “자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과다”를 “지나치게 많이”로 한다.

제28조 규정명 중 “납기와”를 “납부기한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납기는”을 “납부기한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납기를”을 “납부기한을”로 한다.

제29조제6항 중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다만, 중복 감면의 경우 높은 감면을 적용)

제32조제1항 중 “납부고지서로”를 “상·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청구서로”

으로 하며, “휴대폰”을 “휴대전화”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경과하여”를 “지나”로 하고 “납기일”을 “납부기한이 지난”으로 하고 “일할”을 “날 수대로”로 하고 “납기요금에”를 “납부요금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하고 “발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한다.

제35조 규정명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종료하여야”를 “마쳐야”로 하고 “검사 종료가 곤란한”을 “검사를 마치기가 어려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교부한”을 “발급한”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강화하고자 하는”을 “강화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참작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40조제6항 중 “태만히”를 “게을리”로 한다.

제40조의2제3항 중 “벌금에 처한다”를 “벌금을 부과한다”로 한다.

제40조의4제3항 중 “벌금에 처한다”를 “벌금을 부과한다”로 한다.

제41조제1항제1호 중 “폐지하고자 하는”을 “폐지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한다.

제42조 규정명 중 “망실”을 “분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망실하였을”을 “분실하였을”로 한다.

제43조제1항제2호 중 “도용한”을 “몰래 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 중 “사용료의 포탈을 도모한”을 “수도요금을 포탈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6호 중 “사용료를 포탈하고자 한”을 “수도요금을 포탈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8호 중 “태만히”를 “게을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실시하고자 할”을 “실시할”으로 한다.

제44조제3항 중 “도용한”을 “몰래 쓴”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사람과”를 “자와”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은 2015년 8월 납부요금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b>공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b>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b>얻어야</b> 한다.</p> <p>② (생략)</p> <p>제7조(공사비의 <b>산출방법</b>) ① (생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그 공사에 실제로 <b>소요되는</b> 비용을 수요자가 납부하여야 한다.</p> <p>1. ~ 2. (생략)</p> <p>③ (생략)</p> <p>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는 공사비의 50 퍼센트 범위 내에서 공사비를 감면해 줄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소유주택인 경우에는 공사비를 전액 감면해 줄 수 있다.</p> <p>1. (생략)</p> <p>2. 공용 급수설비를 이용하는 주택 중 전용 급수설비를 <b>설치하고자 하는</b> 주택</p> <p>제9조(급수설비의 귀속 및 비용부담)</p> <p>① 급수설비 중 계량기와 대지경계선 밖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b>의하여</b> 시 소유로 하되, 계량기가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경우는 대지경계선부터 계량기 전까지의 시설물은 수도사용자등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p>	<p>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 <b>공급 받으려는 자는</b> ----- ----- <b>받아야</b>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공사비의 <b>계산방법</b>)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b>드는</b> ----- -----.</p> <p>1. ~ 2.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b>설치하려는</b> ----</p> <p>제9조(급수설비의 귀속 및 비용부담)</p> <p>① ----- ----- ----- <b>따라</b> ----- ----- -----</p>

등이 공동주택에 설치된 호별 계량기에 대하여 자체관리를 원하는 경우의 호별 계량기는 수도사용자등의 소유로 한다.

② (생략)

제10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급수 공사비를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2조(직결급수의 시행) ① 직결급수를 하고자 하는 수도사용자등은 시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14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급수설비의 이설·수선·개량·철거 또는 손괴 등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7조(역류방지밸브의 설치)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역류에 따른 수돗물의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량기(공동주택은 호별 계량기) 후단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8조(임시급수) ① 건축공사 등으로 임시가설하는 급수시설(이하 "임시급수"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임시급수를 신청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공사비의 선납) ① -----  
----- 납부하여야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직결급수의 시행) ① -----  
하려는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  
----- 파손 -----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역류방지밸브의 설치) ① -----  
하려는 -----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임시급수) ① -----  
----- 설치하려는 -----  
-----.



②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사설소화용 급수) ① (생략)

② 수도사용자등은 사설소화용 급수설비의 수돗물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2조(급수중지와 급수설비의 폐지)

① (생략)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지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등이 4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생략)

3. 지하수와 수도를 동일 관로로 사용함으로써 교차접속으로 인해 계량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거나 수질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4. (생략)

③ (생략)

제23조(수도요금의 징수)

① ~ ③ (생략)

④ 사용요금과 구경별기본요금의 부과에 있어서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부과되, 사용량의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와 구경별기본요금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② ----- 받으려는 -----

제19조(사설소화용 급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사용할 -----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급수중지와 급수설비의 폐지)

① (현행과 같음)

1. ----- 소재를 알 수 없을 --

2. (현행과 같음)

3. ----- 사용함으로써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수도요금의 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 날 수대로 -----

----- 버린다.

제24조(업종의 적용)

① ~ ② (생략)

③ 수도사용자등의 급수업종 변경신고가 있어 분리계량을 한 경우에는 해당 급수업종별로 각각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다.

제26조(사용요금의 징수결정) ① 시장은 2개월 주기로 계량기에 의하여 계량된 사용량에 따라 사용요금을 산정하되 징수결정은 1개월 단위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27조(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수도사업소장이 되고, 위원은 수도사업소 과장 및 수도돛물에 관하여 관심과 식견이 풍부한 시민 중에서 수도사업소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 심의대상은 과다 부과된 요금으로 인하여 제출된 민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원으로 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 4. (생략)

④ (생략)

제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수도요금의 납기는 해당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요금은 격월고지, 격월징수를 원칙으로

제24조(업종의 적용)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날 수대로 -----.

제26조(사용요금의 징수결정) ① -----  
----- 계량기로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자로 ---.

③ ----- 지나치게 많이 -----  
-----  
-----  
-----.

1.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납부기한과 징수방법) ① -----  
-- 납부기한은 -----.

② -----



**일할** 계산한 연체금을 부담해야 하며, 연체금은 다음번 **납기요금**에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다.

$$\text{연체금} = \text{미납요금} \times (3/100) \times (\text{체납일수} / \text{월력(월력)일수})$$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35조(검사의뢰 및 검사성적서 **교부**)

① 먹는 물에 대한 수질, 수처리제, 수도용 자재와 제품 등에 대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뢰를 받은 때에는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 특성상 20일 이내에 **검사 종료**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검사의뢰자에게 검사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⑥ 제5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교부한** 성적서 원본을 반환요구하거나 말소할 수 있으며, 말소시에는 대상자명·말소사유 및 대상물품명을 공고한다.

제36조(감시항목의 선정) ① 시장은 「수도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강화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시

**날 수대로**

**납부요금**에

② ----- **지난**

**발급하여야** ----.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검사의뢰 및 검사성적서 **발급**)

① ----- **받으려는** -

② ----- **마쳐야** ----- **검사를 마치기가 어려운**

③ (현행과 같음)

④ ----- **발급하여야** ----.

⑤ (현행과 같음)

⑥ ----- **발급한**

제36조(감시항목의 선정) ① -----

**강화하려는**

항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 3.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 수질기준, 검사방법, 검사대상 및 검사주기 등은 세계 보건기구 관련규정 및 외국의 사례를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 ⑤ (생략)

⑥ 급수설비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40조의2(대형건축물등의 소독등 위생조치)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여 소독등 위생조치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수도법」 제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의4(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세척등 조치)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여 세척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수도법」 제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수도사용자등의 신고의무) ① 수도 사용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1. ~ 3. (현행과 같음)

② ----- **고려하여** -----.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게을리** -----.

제40조의2(대형건축물등의 소독등 위생조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벌금을 부과한다.**

제40조의4(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세척등 조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벌금을 부과한다.**

제41조(수도사용자등의 신고의무) ① -----.

1. -----.

폐지하고자 하는 때

- 2. (생략)
-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
- 4. ~ 6. (생략)
- ② (생략)

제42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또는 망실 등에 대한 책임) ①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다만,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제43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이하 "정수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다.

- 1. (생략)
- 2. 급수를 도용한 자
- 3. (생략)
- 4. 계량기(설치봉인 포함)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료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생략)

6. 업종이 다른 급수를 혼용하여 사용료를 포탈하고자 한 자

7. (생략)

8. 제41조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9. (생략)

② 가정용 수도사용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사

폐지하려는 --

- 2. (현행과 같음)
- 3. ----- 변경하려는 때
- 4. ~ 6.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또는 분실 등에 대한 책임) ① -----  
----- 분실하였을 -----  
-----  
-----  
-----.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정수처분) ① -----  
-----  
-----.

- 1. (현행과 같음)
- 2. ----- 몰래쓴 --
- 3. (현행과 같음)
- 4. -----

----- 수도요금  
을 포탈하려는 --

5. (현행과 같음)

6. ----- 수도요금  
을 포탈하려는 --

7. (현행과 같음)

8. ----- 게을리 -----  
-----

9. (현행과 같음)

② -----  
----- 실시할 -----

회복지담당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44조(과태료) ① ~ ② (생략)

③ 시장은 급수를 도용한 자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45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제44조제1항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한 사람과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4조(과태료) ① ~ ② (생략)

③ ----- 도용한 -----  
-----.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포상금 지급) ① -----  
-----  
----- 자와 -----  
-----.

② (현행과 같음)